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 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 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분야 관련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란에서는 관계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되는 '산재보험법판례속보'에 게재된 내용을 선별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사례를 소개합니다.



- 대법원 1998. 5. 26. 98두3860
- 원심판결 : 부산고법 1998. 1. 23. 97구6537 판결
-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시사항

'폐동맥내 색전'으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판결요지

망인의 사인인 '폐동맥내 색전'은 용접과정에서 생긴 유해물질의 과다흡입 또는 누적된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평소 잠재한 혈전생성의 가능성이 발현 내지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폐동맥내 색전'으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판결이유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망 〇〇은 1992. 5. 20.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소외 〇〇실업주식회사에 소방설비공으로 입사하여 1996. 5. 13.부터 소외회사가 시공하는 거제시 소재 아파트의 소방설비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하여 오던 중, 같은

달 23. 18:00경 퇴근하여 동료직원 소외 박○○의 숙소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2흡들이 소주 반병을 마시고 23:00경 박○○과 함께 취침하였는데, 공휴일인 다음날 09:00경 망인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아서 옥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폐동맥내 색전’으로 취침 중 사망한 것으로 판명된 사실과, 망인의 처인 원고가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어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996. 11. 19. 부지급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사인인 ‘폐동맥내 색전’은 용접작업 과정에서 각종 금속성 물질이 산화되어 발생한 유해한 물질이 호흡기로 과다 흡입되어 발생하였거나, 장기간 과도하게 용접작업을 해 오면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생하였거나, 또는 이와 같은 유해, 열악한 작업여건으로 인하여 평소 망인에게 잠재한 혈전생성의 가능성이 발현내지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의학상 ‘폐동맥내 색전’은 혈전과 같은 이물질이 폐동맥을 막는 현상으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사망률이 아주 높은 병인데, 일반적으로 혈전이 잘 생기는 요인으로 는 혈류속도 저하, 혈관의 이상, 응고상태의 이상 등을 들 수 있고, 분만 후 상태, 심부전, 다리손상을 당한 경우, 만성적으로 정맥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오랫동안 침상생

활을 한 경우, 암, 비만, 에스트로젠 제재를 사용한 경우에 혈전이 잘 생길 수 있으며, 그 이외에 특정 직업이나 행위, 특정 상황과 연관지어 발생원인을 언급한 문헌은 찾을 수 없고, 작업장 내의 혼탁한 공기 또는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폐동맥내 색전’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용접작업 과정에서 생긴 유해물질의 과다 흡입 또는 누적된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평소 잠재한 혈전생성의 가능성이 발현 내지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있어서의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인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